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7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 박수민 · 인요한 · 박준태

김상훈 · 송언석 · 이종배

박성훈 • 박정훈 • 박성민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,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 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(이하 "미공제금액"이라 함)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 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 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144조의2, 제144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"이 조"를 "이 조 및 제144조의2"로 한다.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 ① 2027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 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(이하 이 조에서 "미공제금액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 급세액으로 보아 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 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「국세기본법」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

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76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본다.

-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)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 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 환급을 받지 않은 자는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 - ②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는 「국세기 본법」 제5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

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의 양도에 대한 관리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44조의2,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	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	
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	
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	
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	
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	
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	
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	
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	
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	
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	
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	
액을 공제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제금액	2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	가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	
00부의 1(주겨기었으 100	

3.

분의 5.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

- 1) (생략)
- 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: 100분의 15 (중소기업은 100분의 25)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(생 략) 3. (생략) 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1) (현행과 같음)
2)
이 조 및 제144조의2
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사업화

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

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

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

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

하여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

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미공제금액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「국세기본법」 제5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 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

<u><신 설></u>

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「소득세 법」 제76조 또는 「법인세 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할 세액으로 본다.

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에 관한 권리의 양도 특례) 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 환급을 받지 않은 자는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다.

- ②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 리에 대한 충당에 대하여는 「국세기본법」 제53조 제2항 을 준용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양도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에 대한 관리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